

2011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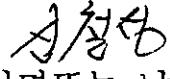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제천시
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
발의자 : 신철성 의원 (서명또는 날인)

외 2인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전 천 성	전천성	
김 호 경	김호경	
이 정 일	이정일	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번호	1480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1. 10
발의자 : 신철성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2011. 1. 1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 중 “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” 를 “제천시의회”로 하고,
 - 제2조 제2호 중 “본부장·실장”을 “국장”으로, “과장, 담당관”을 “담당관, 과장”으로 한다.
 - 제2조 제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5.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

붙임 : 1.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**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”를 “제천시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제2호 중 “본부장·실장” 을 “국장” 으로, “과장, 담당관” 을 “담당관, 과장” 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범위) <생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시장의 보조기관중 <u>본부장·실장</u>, <u>과장</u>, <u>담당관</u> 3~4. <생략> <신설> 	<p>제1조(목적) - - - - -</p> <p>제천시의회 - - - - -</p> <p>제2조(범위) <현행과 같음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현행과 같음> 2. - - - - - <u>국장</u> - - - <u>담당관</u>, <u>과장</u> 3~4. <현행과 같음> 5. <u>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장</u>